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81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이종배·성일종·안태준

이성권 · 김재섭 · 김성원

강승규 · 김예지 · 김용태

엄태영 · 이종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 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및 제12조).

법률 제 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강수계 안에서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제12조 중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 |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 | |
| 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 | |
| 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 |
|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 | |
| 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 | |
|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 |
| 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4. 한강수계 안에서 「수도법」 |
| |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
| |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 |
| |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
| | <u>는 지역</u>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 |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
| 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바에 따라 <u>제11조제1항제1호</u> | <u>제11조제1항제1호,</u> |
|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 제2호 및 제4호 |
|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 | |
| 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 | |

| 한 기술적・재정적 | 지원을 | 할 | |
|-----------|-----|---|--|
| 수 있다. | | | |